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 2012. 2. 6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제출일자 : 2012년 1월 20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- 2012년 1월 26일

## **4. 관련근거**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
-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
- 지방사무 기능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사무 처리지침(행정안전부)

## [검토보고]

##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5.23(법률 제10700호)로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2011.11.1(대통령령 제23277호)로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이 일부 개정되고,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사무 기능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, 우리 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순증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,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# 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에서 마포구의 총 정원의 총수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1,260명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1,269명으로 책정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도 9명이 증원된 1,231명으로 책정함
- (2) 안 별표 1중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현행 76% 이상을 79% 이상으로 3%를 상향 조정하고, 기능·고용직 현행 22% 이내를 19% 이내로 3%를 하향 조정하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능직 30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 30명을 증원함

- (3) 안 별표1의 제3호에서 “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은 78% 이상으로 기능·고용직의 비율은 20%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 한다”라는 항목은 목표비율의 달성으로 삭제함
- (4) 안 별표 2중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중 8급은 현행 30.5% 이내를 31% 이내로 0.5% 상향조정하고, 7급은 현행 8.5% 이상을 8% 이상으로 0.5%를 하향 조정하고,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은 현행 3% 이내를 4% 이내로, 7급은 현행 17% 이내를 19% 이내로, 8급은 현행 35% 이내를 36%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, 9급은 현행 33% 이내를 31% 이내로, 10급은 현행 12% 이상을 10%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 직급을 증원하였음
- (5) 안 별표 3중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30명이 전환되고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직정원은 977명에서 총 39명이 증원된 1,016명으로, 6급 이하 정원은 912명에서 총 39명이 증원된 951명으로 조정하였음

## < 검토의견 >

○ 동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의 개정으로 소외된 하위직급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 확정·통보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순증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도 저촉됨이 없고,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증원에 따른 인력예산도 국비 50%를 포함하여 전액 확보되어 있고, 기능직 30명이 동일직급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도 상호간 상계 조정함에 따라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